

「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주요 개정 내용

구 분	현 행	개 정 안
입지보조금	부지 매입비의 50퍼센트 범위, 5억원 한도	부지 매입비의 70퍼센트 범위, 30억원 한도
고용보조금	1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씩, 12개월 범위, 3억원 한도	1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씩, 12개월 범위, 20억원 한도
교육훈련보조금	10명 초과 1명당 월 100만원씩, 12개월의 범위, 2억원 한도	10명 초과 1명당 월 100만원씩, 12개월의 범위, 10억원 한도
시설보조금	시설투자금액 20억원 초과시 2% 범위 2억원 한도	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10% 범위 30억원 한도
이전보조금	5억원 초과 이전하는 시설가액의 3% 범위 2억원 한도	5억원 초과 이전하는 설비가액의 10% 범위, 10억원 한도
도외 기업의 관내이전 지원	국내에서 연속으로 2년 이상 사업 영위 시	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 영위 시
대규모 투자 기업 특별지원 및 추가지원	시설 투자금액의 10% 이내, 100억원 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설비투자금액의 10% 범위, 부지매입비의 10% 범위, 200억원 한도(설비투자비·부지매입비 각 100억원 한도) • 착공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% 지급, 나머지 30% 정산 이후 지급 가능
관광사업기반 시설 지원		총 투자금액(설계비, 용역비, 토지매입비, 건축비, 기반시설 설치비 등) 300억원 이상 +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시 지원
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 조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규 투자금액(부지매입비, 건축비, 시설 설치비 등 포함) 200억원 이상, 신규 고용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경우 - 부지 확보가 완료된 경우. (기존 사업장 부지, 건축물 취득시 제외) • 투자금액의 10% 내 30억원까지 지원 • 고용보조금은 10억원까지 지원 •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 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임차료의 50% 내 2년간 5억원 지원 가능 - 도외 소재 기업 사업장 도내 이전한 경우 -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
기금용자	용자 한도액은 부지매입비의 60% 이내, 최고 50억원 한도, 무이자 용자	용자 한도액은 100억원 한도, 무이자 용자
보조금 지원결정 및 보전조치	보조금(용자금) 환수의 실효성 확보 방안 - 저당권설정, 가등기, 보증보험증권 등 이행담보 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조금(용자금) 환수 실효성 확보 수단 - 저당권, 가등기, 보증서 등 • 보증보험증권의 경우, 보험가액을 사업이행 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가능 • 보증서의 경우, 사후관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기일 설정되어야 함